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5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0. 17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10. 17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1. 10. 24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으로 인한 부담감 해소

3. 주요골자

- 출산휴가기간 “60일”을 “90일”로 연장(안 제23조제2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되어 2001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 참고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6장에 명시된 사항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현재 고성군 여성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약 29%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기혼여성 공무원이 90%이상으로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공백을 해소할 방안은
- 답 :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1. 10.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